

■ 博士學位論文紹介 ■

논문제목 : 대도시 교통시설정비사업 제도의 개선과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시 도로·도시철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System Establishments and Its Improvement for
 Traffic Facilities of Busan Metropolitan city)

학위취득자 : 강원갑
현소속 : 부산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학위취득학교 : 동아대학교
학위취득년도 : 2002년 2월
지도교수 : 오윤표
전공분야 : 교통공학
출신학교 : 학사 :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차량의 급증에 따른 대도시의 도로교통 혼잡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공급이나 투자재원의 확보는 차량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통문제는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차량의 증가가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여 21세기의 교통문제 해결은 대량성, 신속성, 정시성, 환경친화성을 겸비한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도로와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정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정책대안의 부재와 법적 제도의 결여로 인해 원활한 해결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시설정비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연구결과라도 활용과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행해지지 않으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우선 관련 법규의 신설과 개정이 선행되거나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바, 본 연구는 부산시의 도로와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교통시설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규 조항과 개선내용을 제시하고 이상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부산광역시를 주 대상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00년을 기준으로 과거 10년~20년 전의 통계 및 문헌자료와 10년~20년 후 미래 예측자료를 인용 및 분석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대책으로는 자체재원의 개발·확보나 민간재원의 투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투자재원의 확충은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주로 재원 확충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과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교통시설정비사업의 경우,

- ① 도로 교통시설정비사업 투자를 위한 특정재원 확충을 위해 우선 그 동안 지방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쳐온 예산의 재원배분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도로에 대한 비용부담주체를 달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적 성격이 강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여 국가와 지방간에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동시에 지방양여금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 ② 도로 교통시설정비사업 주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세와 지방세원 재조정,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확대 및 개선, 지방세원의 벌금, 과표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③ 도로건설을 위한 민자사업유치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투자자에게 적정이윤 보장과 위험성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었으므로 기대해 볼만하다.
- ④ 제3섹터 방식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제도 마련과 적극적인 도입 방안이 요청된다.
- ⑤ 지방양여세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 ⑥ 도로정비적립금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
- ⑦ 세목 신설로서 도로 교통시설정비사업에 지방도로 세, 지역개발세, 지역소비세의 활용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⑧ 다양한 도로사업의 전개이다. 입체도로 건설, 타 시설과의 연계 개발, 지하공간 활용, 보행자와의 네트워크의 정비 등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부산도시철도 교통시설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시철도 교통시설정비사업 제도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근원적인 현행 법규인 도시철도법 제15조와 개발이익환수법의 근거규정을 신설·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 ② 한시법으로 2007·12·31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부산교통공단법」을 연장하여야 한다. 심각한 부

채규모 하에서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부채를 부산 시가 수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부산시가 정상적인 체무상환이 가능한 시기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추가로 '단,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은 제외한다'라고 항을 보완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기채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되어 부산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부산도시철도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으로서는 역 세권 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과 도시철도 이용편의시설의 확충, 시간대별 차동운 임제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역세권의 부대수익사업의 적극적 개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지역버스체제로 전환하여 경쟁관계가 아닌 시내버스와 협조 및 보완을 위한 공조 연계수송체계로의 개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환승이용 시 할인제, 인력 축소·조정, 업무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의 이중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아웃 소싱(out sourcing)의 활용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